

 		<h1>설명자료</h1> <p>2020. 2. 4. (화) 배포</p>	
보도일	배포 즉시		
담당과	교수학습평가과	담당자	과 장 조훈희 (☎ 044-203-6729) 연구관 박수경 (☎ 044-203-6447)
	유아교육정책과	담당자	과 장 이지은(☎ 044-203-6445) 사무관 강명원(☎ 044-203-6498)

개학연기, 휴업 등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.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동아일보(최예나김수연 기자 / 2020. 2. 4.(화))
- 제목 : “전국 유치원-초중고 336곳 들쭉날쭉 휴업”

<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

- 2월2일 17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*에 따라 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연기,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.
 - *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확진자 발생에 따른 감염 우려 지역 또는 해당지역의 단위학교(유치원 포함)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개학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
- 현재 학교(유·초·중·고)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*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.
 - *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제2항, 「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·대응 매뉴얼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4조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5조 및 제47조, 「유아교육법」 제12조,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12조 및 제14조 등
- 다만 학교 소재 지역의 감염증 상황, 개학 및 방학 등 학사운영 일정, 학교 인적 구성 상황 등에 따라 해당 학교의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

□ 학교가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학사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한 학교와 판단 기준

-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교
- 2·3차 감염 지역 및 능동감시 대상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교
- 해당 학교에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중국 학생이 다수 재학 (예: 전체의 30%이상)하는 경우
-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

② 학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와 범위

-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수시 협의체제 유지, 시도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
 - 시도교육감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학사일정 조정 요청 → 교육부는 검토 후 동의 → 시도교육감은 지역 또는 학교의 휴업 명령·권고·허가 조치
 - 학교장은 지역 보건당국 협의, 교육(지원)청 협의, 학운위 심의 등을 거쳐 학사일정 조정 → 교육(지원)청에 보고
 - 학교장은 법정 수업일수*를 고려하여 학사일정을 조정하되, 긴박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/10까지 감축 가능
- * (유치원) 180일, (초·중·고등학교) 190일

③ 학사일정의 조정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

- 생활지도, 저소득층 급식지원, 방과 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, 등교 희망 학생 관리, 수업 결손 보충계획 수립 등 학교 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

□ 교육부는 위 사항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즉시 안내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